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2.8.4일 시행)되어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 지원 사항, 표준협약안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에 체결하는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정의를 규정(안 제1-2-2)
- 나.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간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안 제3-1-2)
- 다. 초광역권 투자협약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6)
- 라.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 협약안,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신설함(별지 제7호부터 제10호)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9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제19조제9항”으로 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다.

제1-1-2를 삭제한다.

제1-2-1부터 제1-2-2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2-1. 이 지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1-2-2.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자체’라고 한다)가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말한다.

제1-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3.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협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3-2 자율성의 원칙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 및 지원시책은 지역이 실정에 맞게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2-1-1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2-1-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1-2. 지자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사업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과의 관계 :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일 것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부처’라 한다)의 범위 : 복수의 부처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일 것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 지역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삶의 질 개선 등 사업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일 것

(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에 대

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사업일 것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 사업주체가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사업, 토지 확보 등 사전절차가 원만히 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예산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 관리·운영을 통해 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일 것

제2-1-3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1-3. 그 밖에 지역 간 공동의 자원을 활용하여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등도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제2-2-1의 (5)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 심의 결과 제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제2-3-1부터 제2-3-3까지를 삭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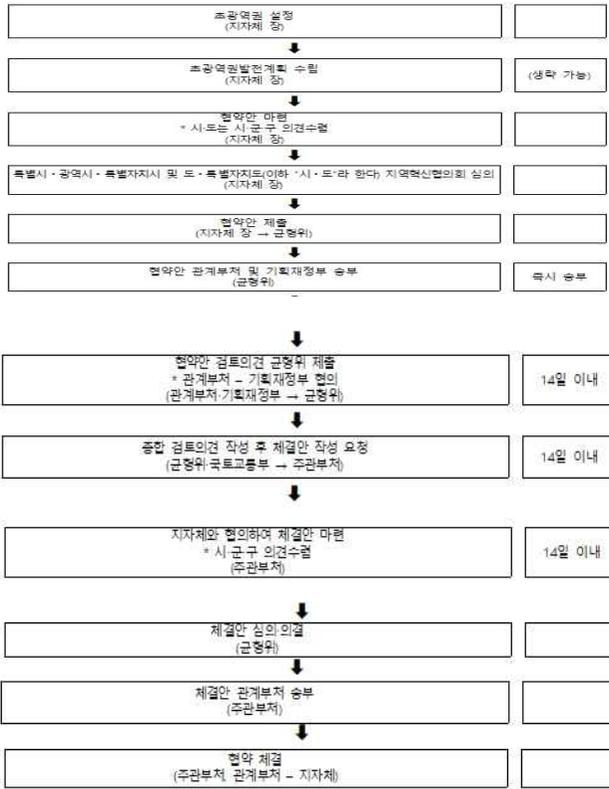
제3장 제1절의 “추진 절차”를 “협약 체결 절차”로 한다.

제3-1-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영 제19조). 단,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경우 3-1-2를 따른다.

제3-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2.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2-1부터 제3-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2-1. 협약안 작성 주체는 지자체 장으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지자체 장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균형위에 제출해야 한다.

- (1) 협약안 본문
- (2) 부속서류
 - ①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 ② 공동추진 협약서(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 ④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 ⑤ 기타 필요서류

3-2-2. 지자체 장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을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3-2-3. 복수의 지자체가 협약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추진 협약서’를 작성한다.

3-2-4. 지자체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초광역권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관리 주체는 ‘3-3-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균형위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5. 협약안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협약대상사업의 내용과 범위
- (3) 국가의 책무

- (4)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5) 대상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 (6) 협약의 효력
- (7) 기타

3-2-6. 기초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 (1) 단일 기초지자체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 (2) 하나의 시·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 기초지자체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 (3) 두 개 이상의 시·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속 시·도에 각각 협약안을 제출한다.

3-2-7. 시·도지사는 균형위에 협약안을 제출하기 전에 협약안에 대해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 (1)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 관할구역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시·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시·도 지역혁신협회의 의견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초광역권 시·도 지역혁신협회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3)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관 지자체

를 정한 경우, 주관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주관 지자체를 관할하는 소속 시·도지사가 균형위에 협약안을 제출한다.

제3-3-1의 (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약에 포함된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법적 선결요건, 갈등요소, 기존 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균형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3-3-3부터 제3-3-7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3-3.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경우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는 검토 의견을 작성할 때 지역간 교류 및 협력정도, 균형발전 여건, 협력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는 필요 시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3-3-4. 주관부처는 다음을 감안하여 균형위가 정한다.

- (1)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이 요청한 관계부처
- (2) 주된 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의 소관 부처
- (3) 소관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

3-3-5. 주관부처는 체결안 작성시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과의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체결안을 작성하고, 균형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체결안에 대해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3-6. 주관부처는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체결안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3-3-7.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공동으로 '3-3-5'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제4-2-2부터 제4-2-4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2-2. 주관부처 및 관련부처는 '4-2-1'에 따른 추진 실적에 따라 협약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협약의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변경 절차는 '5-1-1'에서 '5-1-3'의 규정에 따른다.

4-2-3. 균형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2-4. 균형위는 협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1-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1-1.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은 다음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협약안의 제출 및 관계기관 협의 등과 관련하여 '3-1-1' 및 '3-1-2'의 절차를 준용한다.

(1) 총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는 경우

*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전용예산(정부보조금+지자체매칭비)으로 총당되는 사업비

(2)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경우(다만, 단순 이월·재이월은 제외한다)

(3) 협약 당사자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균형위에 요청하는 경우

제5-1-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1-2.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은 '5-1-1'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당사자(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는 '별지 제6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보고'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균형위 및 간사부처(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제6장 제1절 및 제2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절 협약에 대한 재원조달

6-1-1. 투자비용은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일정비율을 분담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분담할 수 있다.

6-1-2.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6-1-3.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각각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

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협약에 대한 지원

6-2-1. 지자체는 협약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2-2.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조정 또는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할 수 있다.

6-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를 활용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관련 컨설팅 총괄
- (2)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 (3)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성과 평가
- (4)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제도개선 연구
- (5) 그 밖에 균형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6-2-4. 균형위는 지자체의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사업 목록을 지자체에 제시할 수 있다.

6-2-5.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율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2-6.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초광역권설정 지자체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정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원
-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지원
- (3)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지원
- (4) 공모의 방식으로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1-1의 “2020년”을 2023년“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1호를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서식 제5호를 별첨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서식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별첨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1-1-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p>	<p>1-1-1.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제19조-----</p>
<p>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p>	<p>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1-1-2.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1-2-1. 이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 체결 절차, 이행, 변경, 해약, 지원 등에 적용한다.</p>	<p>1-2-1. 이 지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p>

<신 설>

1-2-2. 지역발전투자협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협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1-3-2. 자율성의 원칙 : 협약의 대상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균형발전 계획 또는 사업이며, 사업은 지역이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2-1-1.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합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지자체'라고 한다)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적용한다.

1-2-2.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자체'라고 한다)가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말한다.

1-2-3. -----

-----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 협약의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1-3-2. 자율성의 원칙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 및 지원시책은 지역이 실정에 맞게 스스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2-1-1. -----
----- 법 -----

위한 사업으로 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1-2.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여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18.2) >

3대 전략	4대 핵심 과제
(사람) 인종되고 품격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공간) 지방균형 발전공간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감소지역으로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① 혁신도시 시즌2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③ 지역 유류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2-1-3. 지자체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제8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사업을 정하여야 한다.

(1)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과의 관계 :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면서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일

<삭 제>

2-1-2. -----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절 추진 절차

3-1-1. 투자협약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영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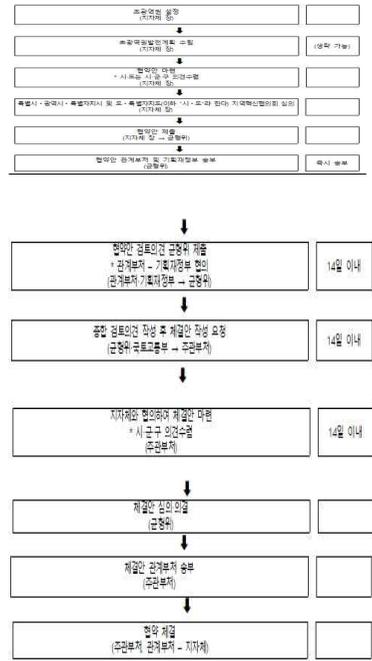
<신 설>

제2절 협약안 작성 및 제출
3-2-1. (생략)

제1절 협약 체결 절차

3-1-1.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영 제19조). 단,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경우 3-1-2를 따른다.

3-1-2.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절 -----
3-2-1. (현행과 같음)

- (1) 본문
- (2) 체결조건

(3) 부속서류('3-2-2' (2)호부터 (5)호까지를 부속서류로 한다)

3-2-2. 지자체 장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균형위에 제출해야 한다.

- (1)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첨 1. 지역발전투자협약(안) 양식)
- (2) 공동추진 협약서(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첨 2. 공동추진 협약서)
- (3) 사업계획서(별첨 3. 사업계획서 양식과 작성요령)
- (4)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 (1) 협약안 본문
- (2) 부속서류
 - ① 지역발전투자협약(안)(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 ② 공동추진 협약서(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 ③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
 - ④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
 - ⑤ 기타 필요서류

<삭 제>

<삭 제>

서(별첨 4.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서식)

(5) 기타 필요서류

3-2-3. 지자체 장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을 참조하여 협약안을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신 설>

3-2-4. 지자체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은 지역 실정 및 사업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관리 주체는 '3-3-2'에 따른 주관부처가 된다. 다만, 균형위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2. 지자체 장은 사업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1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안)'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을 참조하여-----
-----.

3-2-3. 복수의 지자체가 협약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동추진 협약서'를 작성한다.

3-2-4. 지자체 장은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 또는 '별지 제8호서식 초광역권 사업계획서 및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

-----.

3-2-5. 협약안의 체결조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3-2-6.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지자체 장은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1)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2) 하나의 시·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 기초지자체가 주관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에 제출한다. 이 경우에는 '별첨 2. 공동추진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2-7. 시·도지사는 균형위에 협약안을 제출하기 전에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 관할구역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2-5. 협약안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3-2-6. 기초지자체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1) 단일 기초지자체의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2) 하나의 시·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관 기초지자체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약안을 제출한다.

(3) 두 개 이상의 시·도에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속 시·도에 각각 협약안을 제출한다.

3-2-7. 시·도지사는 균형위에 협약안을 제출하기 전에 협약안에 대해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 지역혁신협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1) 시·도지사는 시·도 지역혁신협

(2)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시·도 관할구역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 초광역권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관 지자체를 정한 경우, 주관 지자체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또는 주관 지자체를 관할하는 소속 시·도지사가 균형위에 협약안을 제출한다.

3-3-1. (생략)

(1) (생략)

(2)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약사업에 대하여 기존 국고보조사업과의 중복여부, 법적 선결요건, 갈등요소, 기존 정책과의 조화성 등을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균형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3-3-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협약에 포함된 사업(이하 ‘협약사업’이라 한다)-----

3-3-3.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경우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는 검토 의견을 작성할 때

지역간 교류 및 협력정도, 균형발전 여건, 협력사업 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등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부)는 필요 시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3-3-3. 주관부처는 다음을 감안하여 균형위가 정한다.

- (1)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이 요청한 관계부처
- (2) 주된 목적을 가진 단위사업의 소관 부처
- (3) 소관 예산이 가장 많은 부처

3-3-4. 주관부처는 체결안 작성시 협약안을 제출한 지자체 장과의 협의를 거쳐 14일 이내에 체결안을 작성하고, 균형위에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협약안을 작성하기 전에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3-5. 주관부처는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

3-3-4.-----

3-3-5.-----

3-3-6.-----

면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체결안을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3-3-6.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공동으로 '3-3-5'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신 설>

4-2-2. 균형위는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2-3. 균형위는 협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필요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요구사항 등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1-1.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

3-3-7.-----

4-2-2. 주관부처 및 관련부처는 '4-2-1'에 따른 추진 실적에 따라 협약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협약의 변경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의 변경 절차는 '5-1-1'에서 '5-1-3'의 규정에 따른다.

4-2-3.-----

4-2-4.-----

5-1-1.-----

은 다음의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5-1-2. 주관부처 또는 지자체 장은 '5-1-1'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체결 당사자 간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처는 '별지 제6호서식 지역발전투자협약 변경보고'에 따라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를 간사부처(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간사부처는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균형위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제6장 협약에 대한 지원

제1절 협약에 대한 지원

<신 설>

6-1-1.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조정 또는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

(1) ~ (3) (현행과 같음)

5-1-2. -----

제6장 -----

제1절 협약에 대한 지원

제2절 협약에 대한 지원

6-1-1. (현행 2-3-1과 같음)

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 지원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6-1-2. 지자체는 협약사업의 추진에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1-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국토연구원)를 활용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관련 컨설팅 총괄
- (2)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
- (3)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성과 평가
- (4) 지역발전투자협약 관련 제도 개선 연구
- (5) 그 밖에 균형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신 설>

6-1-2. (현행 2-3-2와 같음)

6-1-3. (현행 2-3-3과 같음)

6-2-1.지자체는 협약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및 분야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2-2. 균형위와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 협의·조정 또는 사업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협약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다. 간사부처(국토교통부)는 지원 업무 등을 총괄할 수 있다.

6-2-3. (현행 6-1-3과 같음)

6-2-4. 균형위는 지자체의 협약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사업을 메뉴관 형태로 지자체에 제시할 수 있다.

6-2-5.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에 필요한 지역의 수요와 성과 달성도를 고려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2)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고 보조비용의 차등 적용을 받기 위한 예산안의 편성 및 조정 등에

<신 설>

관한 사항
6-2-6.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해당 초광역권설정 지자체가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정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원
- (2)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지원
- (3)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특례지구의 지정에 관한 지원
- (4) 공모의 방식으로 초광역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관계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7-1-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7-1-1. -----

2023년 -----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